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2항에 따른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는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른 직무의 범위에서 범인과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②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특별사법경찰리”라 한다)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 및 특별사법경찰리(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는 범죄를 수사하거나 그 수사를 보조하는 경우에 검사의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검사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신속성·투명성과 수

사의 공정성·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지도·조언할 수 있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역량 강화·유지를 위하여 인사·처우 등의 우대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수사사건의 공개금지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기밀을 엄수해야 하며,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수사 관련 사항,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개인 정보, 그 밖에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구체적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권한이나 수사지휘 권한이 없는 상급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단,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7항, 제197조의3제7항, 제245조의11제2항 등에 따른 직무배제, 징계, 수사공무원 교체 등을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적용범위) 특별사법경찰관리의 범죄 수사에 관하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7조의2, 제3장 제1절, 제16조(제5항은 제외한다), 제16조의2, 제3장 제3절(제21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3장 제4절, 제3장 제5절, 제55조부터 제61조의2(제60조제6항은 제외한다), 제65조의2, 제65조의3, 제66조, 제67조, 제69조, 제71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사법경찰리”는 “특별사법경찰리”로 본다.

제2장 수 사

제1절 통 칙

제6조(관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법령에 따라 정해진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관할구역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수사의 경합)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법경찰관리(일반사법경찰관리, 다른 기관 소속의 특별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에게 피의자의 체포·출석요구·조사·호송, 압수·수색·검증, 참고인의 출석요구·조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와 경합하여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에 따른 협의·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에 협의·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소속기관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인 경우 : 소속기관의 장
2. 소속기관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 : 소속부서의 장
3. 소속기관의 장 및 소속부서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 : 특별사법경찰관 중 최상급자

제8조(수사의 협조)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법경찰관(일반사법경찰관, 다른 기관 소속의 특별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에게 피의자의 체포·출석요구·조사·호송, 압수·수색·검증, 참고인의 출석요구·조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태양, 범죄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 범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거나 다른 수사기관과 업무권한의 충돌 및 분쟁이 생기거나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하여 다른 수사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검사에게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신속히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사건의 단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은 1

건으로 처리한다.

1.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사건. 이 경우 이미 공소청 또는 이에 상응하는 관서에 송치하거나 이송한 후에 수리한 사건도 포함한다.
2.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과 그 처분을 한 후 검사의 지도·조언에 따라 다시 수사를 개시한 사건
3. 1건으로 함께 수사하도록 검사의 지도·조언을 받은 사건
4. 다른 기관이나 다른 관서로부터 1건으로 이송된 사건

제10조(고소인등의 이의제기) 고소인등은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제1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소속기관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인 경우 : 소속기관의 장
2. 소속기관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 : 소속부서의 장
3. 소속기관의 장 및 소속부서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 : 특별사법경찰관 중 최상급자(단, 대상자가 최상급자인 경우, 대상자를 제외한 특별사법경찰관 중 가장 직급이 높은 사람)

제11조(징계요구 등) ① 각급 공소청의 장은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7항, 제197조의3제7항에 따른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1. 소속기관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인 경우 : 소속기관의 장
2. 소속기관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 : 소속부서의 장

3. 소속기관의 장 및 소속부서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 :

특별사법경찰관 중 최상급자(단, 대상자가 최상급자인 경우, 대상자를 제외한 특별사법경찰관 중 가장 직급이 높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징계 요구를 받은 사람이 대상자에 대한 징계 권한이 없는 경우 권한 있는 사람에게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수사를 위한 교육) ① 검찰총장,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절 수사의 개시

제13조(범죄인지서)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범죄인지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필요한 서식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변사자의 검시)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체가 있으면 변사사건 발생사실을 즉시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시

를 했을 때에는 검시조서를, 검증영장이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증을 했을 경우에는 검증조서를 각각 작성하여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22조에 따라 변사자의 검시를 한 사건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 종결 전에 수사할 사항 등에 관하여 검사의 지도·조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본 조에 필요한 서식과 그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수사개시 통보) 특별사법경찰관은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에서 부여한 직무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했을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수사개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서식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1. 내란의 죄(「형법」 제2편 제1장에 따른 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2. 외환의 죄(「형법」 제2편 제2장에 따른 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3.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형법」 제2편 제5장에 따른 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4. 폭발물과 방화 및 실화에 관한 죄(「형법」 제2편 제6장 및 제13장에 따른 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5. 살인의 죄(「형법」 제2편제24장에 따른 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6. 상해치사·폭행치사죄(「형법」 제259조 및 제262조에 따른 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7.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및 공무방해에 관한 죄(「형법」 제2편제7장·제8장에 따른 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8.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
9. 「군형법」 제2편제1장에 따른 반란의 죄,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 및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4조에 따른 범죄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중 피해규모, 광역성, 연쇄성, 범죄 태양 등에 비추어 사회적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범죄가.
 - 가. 「관세법」 위반범죄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
 - 다. 「철도안전법」 위반범죄
 - 라. 「출입국관리법」 위반범죄
 - 마.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디자인보호법」 위반범죄

바.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및 같은 법 제102조제5항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범죄

11. 검찰총장,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이 특별히 지정한 사항

제16조(직무범위 외의 범죄발생에 대한 통보)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그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범죄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발견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발견한 범죄사실이나 증거자료를 검사의 지도·조언을 받아 관할이 있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통보사실을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1. 해당 범죄가 진행 중에 있는 등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

2. 해당 범죄의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되어 있을 때

② 제1항의 경우 검사는 범죄의 태양, 범죄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동수사, 이첩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본 조에 필요한 서식과 그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범죄통계원표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마다 범죄통계원표

(발생사건표, 검거사건표 및 피의자표를 말한다)를 작성하여 검찰총장이나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죄통계원표 작성 등에 필요한 서식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절 협력 및 지도·조언

제18조(상호협력의 원칙)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상호 존중해야 하며,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협력해야 한다.

제19조(지도·조언 일반) ① 검찰총장,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필요한 일반적 지도·조언 지침이나 세부 지침 등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검찰총장,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일반적 지도·조언 지침이나 세부 지침 등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 현황 및 운영 실태, 사건 처리 현황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이 제1항에 따라 일반적 지도·조언을 하거나 세부 지침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일반적 지도·조언 또는 세부 지침 등의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제20조(지도·조언의 요청)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할 때 검사의 지도·조언이 필요하면 지도·조언 요청서로 검사의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유선으로 하되 사후에 지체없이 그 지도·조언 요청 취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에 필요한 서식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중요범죄의 입건에 관한 지도·조언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검사에게 입건 여부에 대한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

1. 내란의 죄(「형법」 제2편제1장에 따른 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2. 외환의 죄(「형법」 제2편제2장에 따른 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3. 공안을 해하는 죄(「형법」 제2편제5장에 따른 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4.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
5. 「군사기밀보호법」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범죄에 대해서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에게 입건 여부에 대한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검사의 직권에 의한 지도·조언) ①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3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지도·조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도·조언에 필요한 서식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법

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지도·조언의 방식) ①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사건에 대한 지도·조언을 할 때에는 서면 또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긴급한 상황, 이미 지도·조언한 내용을 보완하거나 지도·조언 내용이 명확한 경우 등 서면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따른 지도·조언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두나 전화 등 간편한 방식으로 지도·조언을 할 수 있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간편한 방식으로 지도·조언을 하였을 때에는 서면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지도·조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간편한 방식으로 지도·조언을 받은 경우 그 지도·조언 취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지도·조언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모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검사는 사건이 복잡하여 설명이 필요한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대면하여 설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검사에게 대면하여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지도·조언의 기한 준수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가 공소

시효 완성 임박 등 신속한 사건 처리의 필요로 인해 이행 기한을 정한 지도·조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지도·조언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사가 지정한 제1항의 기한 내에 지도·조언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이행 기한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연장 요청에 필요한 서식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③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개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필요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게 하고 수사의 진행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조언을 할 수 있다.

제25조(지도·조언이 있는 사건의 처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도·조언을 받은 경우 그 지도·조언을 존중하여 수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도·조언이 이루어진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검사가 지도·조언한 사항 및 그 이행 내용,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유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구체적 사유를 의견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지도·조언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따른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의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에 따라 시

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필요한 서식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절 강제수사와 고소·고발 사건

제26조(구금과 건강상태)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구금할 때에는 그의 건강상태를 조사하고 체포·구속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검사에게 통보하고 지도·조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7조(체포·구속장소 점검 관련 조치)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198조의2에 따른 검사의 체포·구속장소 점검과 관련하여 체포·구속인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198조의2에 따라 체포·구속장소를 점검한 후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한 때에는 즉시 피의자를 석방하고, 피의자석방명령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③ 본 조에 필요한 서식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피의자의 도주 등) 특별사법경찰관은 체포하거나 구속한 피의자가 도주 또는 사망하거나, 그 밖의 이상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통보하고 지도·조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9조(고소사건의 수사기간)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고소나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고소나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지도·조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장 사건송치 등

제30조(사건송치)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한 때에는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해야 한다.

1. 소속관서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인 경우: 소속관서의 장의 명의
2. 소속관서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 수사 주무과장인 특별사법경찰관의 명의
3. 소속관서의 장 및 수사 주무과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 수사를 담당한 특별사법경찰관의 명의

제31조(의견서 작성)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 의견서를 직접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서식과 그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참고인 등의 소재수사)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참고인중지의견으

로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참고인 등 소재수사 관리부를 작성하여 별도로 편철하여 관리하고, 그 사본 1부를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참고인 등에 대한 소재수사를 행해야 한다. 다만,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의 송치의견과 다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참고인 등 소재수사 관리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소재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본 조에 필요한 서식과 그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송치 후의 수사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사건을 송치한 후에 해당 사건을 계속 수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임검사에게 지도·조언을 요청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사건을 송치한 후에 해당 사건의 피의자가 저지른 다른 범죄의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주임검사에게 통보하고 지도·조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4조(기소중지·참고인중지 처분된 자에 대한 수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1. 검사가 소재불명(所在不明)으로 기소중지한 피의자를 발견한 경우
2. 특정 증거가 불분명하여 기소중지된 후 그 증거를 발견한 경우
3. 소재불명으로 참고인중지된 후 그 참고인을 발견한 경우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기소중지된 피의자가 다른 기관에서 검거된 경우에는 즉시 그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호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참고인중지의 경우 그 참고인이 교도소, 구치소 등에 구금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을 때에는 즉시 검사에게 통보하고 출장조사, 공조수사 촉탁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지도·조언을 요청해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피의자 등 소재발견처리부에 이를 적어야 한다.

⑤ 본 조에 필요한 서식과 그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공소의 유지

제35조(공소유지를 위한 협력) ① 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에게 공판기일에 재정(在廷)하여 검사의 공소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검찰총장,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공소유지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파견, 증거 자료의 분석 등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기관

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6조(증언 준비)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그 직무와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증언하는 경우에는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에게 면담 요청하는 등 사전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2항은 2027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사소송법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부칙제1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9년 8월 3일을 말한다.